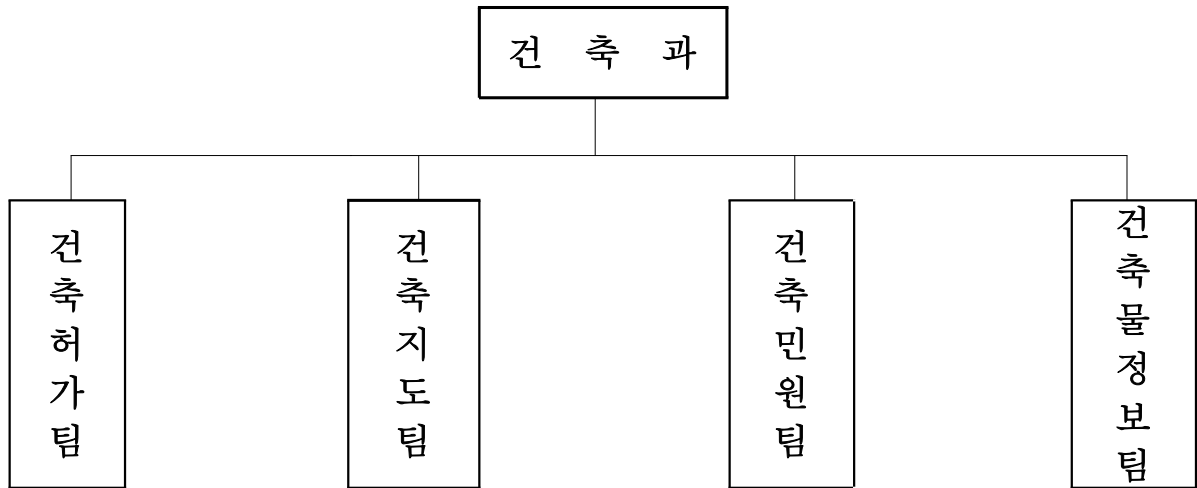


□건설교통위원회
(건축과)

조직 및 인력현황

□ 조 직(4팀)



□ 인 원 : (15/14)

(정원/현원)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직
계	15/14	1/1	4/4	6/4	2/2	2/3	
건축허가팀	5/5	1/1	1/1	2/2	1/1		
건축지도팀	4/3		1/1	2/1		1/1	
건축민원팀	3/3		1/1	1/1	1/1		
건축물정보팀	3/3		1/1	1/0	0/0	1/2	

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강화

□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대상
 - 시공중인 건축공사장
 - ▶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시공대상건축물
 - ▶ 공동주택 100세대이하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
 - 특정관리대상 시설물
 - ▶ 10년이상 아파트등, 공동주택 166개소
 - 다중이용시설물(대형판매시설, 집회시설, 의료시설 등)
 - ▶ 백화점,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, 교회 등 집회시설

□ 추진계획

- 2009년 점검계획 수립 _____ '08 12월
- 시공중인 건축공사장 현장 관계자 간담회 실시 _____ 분기1회
 - 감리자, 시공자등 건축관계자
- 안전관리 실태 점검
 - 시공중인 건축공사장 점검 : 분기 1회(감리자 교체점검 2회)
 - ▶ 문화시민운동 병행 추진 주민 통행권 확보
 - ▶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건축공사장 환경관리
 -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점검 : 년2회
 - ▶ 10년이상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등 166개소, 옹벽등)
 - 다중이용시설물 및 특별점검 : 년4회(해빙기, 우기, 설날, 추석절)
 - ▶ 백화점등 대형판매·의료·집회시설 등
 - 기타 수시점검

□ 기대효과

-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 품질 향상 기여

건축 민원처리기간 단축 지속 운영

□ 사업개요

- 건축 인·허가는 처리일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법정처리기한 35%이상 단축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도모

□ 추진계획

- 운영기간 : 연중
- 대 상
 -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허가
- 운영방법
 - 건축 관계자(설계·감리·시공 등) 사전 홍보
 - 건축 민원신청 이전에 설계자와 사전검토 실시
 - ▶ 건축법 등 적합여부를 담당자의 팀장 및 과장이 인·허가 설계도서 일괄검토
 - ▶ 정보통신, 배수설치 기준 및 정화조 등 해당 협의부서와 인·허가 서류 접수 전 주요 법적사항 사전검토
 - 건축 인·허가 실무자 직무연찬 교육
 - ▶ 건축법 등 관련규정 제·개정내용 업무연찬
 - ▶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관련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
 - ▶ 건축인·허가 처리시 관련법 적용상 문제점 및 처리방안
 - ▶ 건축관련 적용법규에 대한 담당자 상호간 업무연찬
 - ▶ 민원사무처리 규정 해설

□ 기대효과

- 신속, 정확한 건축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신뢰행정 제고

위·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

□ 사업개요

- 위·불법 건축행위 정비율 67% 달성(전년대비 2%상향)추진
- 지역별 예찰활동을 통한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

□ 추진계획

○ 불법 건축행위 원상복구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

- 2008년 항공촬영(일반지역) 조사결과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—— 120건

계	사무실	주거	창고	세차장	수리점	주차장	비 고
120개소	32	9	74	1	1	3	

- ➡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고발 강화, 이행강제금 부과 등
-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지도점검 _____ 분기 1회
- ➡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부착 및 정비, 위법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
-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_____ 반기 1회
- ➡ 허가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위법 공사감리 건축사 행정조치 의뢰
- 불법건축물 표지판 부착 및 정비 _____ 월 1회
-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

- ➡ 재산·동산압류, 고액체납자(500만 원 이상) 공매의뢰 등

○ 건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

- 「시민신고모니터요원」 확대구성 운영 _____ 20명(동별 2명)
- ➡ 격월 간담회 개최, 활동 우수자 연말표창(구청장)
- 「불법행위 자제 서한문」 발송 - 반기 1회 (개발제한구역내 부동산 소유자)
- 지역별 책임예찰 담당제 운영 _____ 2개반 5명(1일 1회 순찰)

□ 기대 효과

-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 고취와 건전한 건축 행정 정착

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제공

□ 사업개요

- 건축물대장 변경 시 등기촉탁을 신청하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대행 해 주는 서비스로,
- 시민이 등기소,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는 절차 생략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□ 추진계획

- 서비스 제공기간 : 연중

○ 등기촉탁 대상

-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
- 사용승인(증축, 용도변경, 대수선등) 내용중 건축물의 면적·구조·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(신축제외)
- 건축물의 철거·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변경된 경우

○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건축물 등기촉탁

- 구청 홈페이지 및 관내 주민자치센터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홍보
 - ▶ 분기별 1회이상 홍보 실시
-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의 변경시 민원인 사전 안내
 - ▶ 신청 민원인 알림공문에 안내문 추가

※ 안내문

「건축물대장 변경으로 변경등기를 원하는 경우 소사구 건축과(☎ 340-6465, 6466)로 신청하여 주시면 무료로 촉탁등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

(단, 등록세·교육세 및 대법원 수입증지료는 본인 부담)」

- 건축물대장 변경 시 등기촉탁 및 등기필통지서 송부

- ▶ 등기촉탁을 대행하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절약 및 등기소 방문등 절차 생략으로 소요시간 감소
- ▶ 등기변경 법정기간(변경일로부터 30일)내에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발생감소

□ 기대효과

- 시민에 대한 시간적·경제적 비용 경감 및 시민의 편의 증진